

독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장원규



지역법제 Issue Paper 16-16-③

독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장 원 규

독일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입법적 동향

Legislative Issues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Germany

연구자 : 장원규(부연구위원)
Jang, Wonkyu

2016. 11. 30.

목 차

제 1 장 시작하며	5
I. 영유아 학대의 문제	5
II. 연구의 취지 및 배경	7
제 2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	11
I. 법적인 의미에서 개입	11
II.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법제	11
III.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기관 및 정책	17
제 3 장 영유아복지를 위한 최근 개혁 논의	21
I. 사회법 제8편의 개혁을 위한 개정 초안	21
1. 배 경	21
2. 주요 내용	23
II. 영유아복지의 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25
제 4 장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긴장관계	27
제 5 장 시사점	31
제 6 장 마치며	35
참 고 문 헌	37

제 1 장 시작하며

I. 영유아 학대의 문제

- 최근 다시금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 방임과 부족한 돌봄,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 특히 화목해 보이는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학대는 영유아 시절에 빈번함.¹⁾
 -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 10명 중 1명은 반복학대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더욱이 영유아 학대 주체의 80%가 부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로부터 당한 학대가 대다수임.²⁾ 학대를 당한 영유아를 일정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책 부실한 상황에 영유아가 노출되고 있음.³⁾
 - 영유아 학대문제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 중 12.7%만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⁴⁾의 정보 공시명단에 공개되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⁵⁾
- 학대 경험에 대한 위해는 예를 들어 연령, 심리상 주변 환경, 문화적 배경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됨.

1) 이와 달리 청소년기에 증강된 폭력은 자유시간과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때 새로운 미디어가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함, Ziegenhain/Künster/Besier, Gewalt gegen Kinder, Bundesgesundheitsbl. (2016) 59, 44.

2) 김동주, “‘학대 노출 아동’ 10명 중 1명 반복학대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2016. 9. 26,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273602> (최근 접속일: 2016. 11. 24).

3) 위의 글.

4) 해당 누리집은 <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이다.

5) 박종현,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중 13%만 명단 공개”, 메디컬투데이, 2016. 10. 14,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274339> (최근 접속일: 2016. 11. 24).

- 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로 분류할 수 있음.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혼합된 학대는 심각한 결과와 결부된 폭력 유형임(예: 뮌헨하우젠 대리신드롬(Münchhausen-Stellvertreter-Syndrom)).⁶⁾ 기타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의학적 조치의 부인, 자연식 제공, 강제된 약물소비 등.

<표> 영유아 학대 및 복지위해의 유형⁷⁾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영유아를 손·물건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고통을 줌.	성폭행, 성관계 강요, 성적인 자극을 주고 포르노 등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유아에게 성적인 자극과 행위를 하는 것.
방 임	심리적 학대
적절한 의식주로 보살피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병원 등에 보내지 않는 등 양육의 거부나 영유아를 경시함. 가족 및 제3자의 학대를 간과함.	영유아의 존재를 무시하고 겁먹게 하는 욕설을 퍼부어 우격다짐하고 부부 사이에 폭력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자존심을 훼손함.

6) Maywald, Schutz vor Kindeswohlgefährdung in der Kindertagespflege (2013), S. 18, http://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Maywald_Kindeswohlgefaehrdung09_2013.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7). 상해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리의 것인 듯한 정신질환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영유아가 환자의 상해대상인 예에서 환자는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행위가 반복해서 위험한 상해를 짊어질 위험이 있다, Wikipedia, “Münchhausen-Stellvertretersyndrom”, <https://de.wikipedia.org/wiki/M%C3%BCnchhausen-Stellvertretersyndrom> (최근 접속일: 2016. 11. 27).

7) 児童虐待防止協会, “子ども虐待とは”, <http://www.apca.jp/prevention/abuse> (최근 접속일: 2016. 11. 21); Maywald, Schutz vor Kindeswohlgefährdung in der Kindertagespflege (2013), S. 16~18, http://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Maywald_Kindeswohlgefaehrdung09_2013.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7).

II. 연구의 취지 및 배경

-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독일에서 대응하고 있는 법제 현안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을 도출해 봄. 다음과 같이 비교법제적 관점에서 독일이 대상국가로 적합한 이유⁸⁾
 - 2차 세대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시작하여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경제강국으로 성장함.
 - 천연자원 부족, 인적자원 풍부, 교육정책에 중점
 -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주도형
 - 단일민족으로 집단문화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강함.
 - 독일법제는 한국법제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
-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영유아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의 계기가 있었음.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이미 이른바 새로운 이환율(Morbidity, 罹患率)이라고 하는 영유아의 질병스펙트럼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⁹⁾ 예를 들어 급성에서부터 만성적인 질병까지, 육체에서부터 정신적인 이목집중까지 영유아의 질병스펙트럼의 유예
 - 사회심리적 구호가 필요한 가정은 적기에 연락이 될 수 있고, 구호서비스는 각 가정의 개별적인 필요에 정확히 맞추어 제공될 수 있음.

8) 김택환, 넥스트 코리아, 메디치, 2015, 9~10; 홍문기, “독일발전과정에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 형성과정과 함의 - 역사적·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2016, 114면 재인용.

9) Thaiss, Frühe Hilfen in Deutschland - Chancen und Herausforderungen, Bundesgesundheitsbl. (2016) 59, 1245.

제 1 장 시작하며

- 지난 10여 년 동안 독일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¹⁰⁾상 청소년청에 의한 일시보호권한으로 영유아 보호문제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들어남.
 - 영유아 학대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사후 개입과정을 거쳐 영유아 보호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영유아가 이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태여서 이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¹¹⁾
- 이후 담당기구의 권한, 민간단체와의 협력문제, 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영유아 보호절차를 법에 상세히 규정함. 영유아 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전에 영유아 및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에 집중함.¹²⁾
 - 청소년청의 개입, 일시보호, 가정법원의 관여, 민간단체의 협력(아동·청소년복지법 제8a조). 민법과 아동복지에 대한 위해발생 시 가정법원 조치의 간소화법¹³⁾에 의해 가정법원이 영유아의 위해한 상황 발생 전 청소년청과 함께 정황과 관련증거 없이도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에는 가족소득이 평균소득의 60% 이하로 인해 빈곤으로 간주되는 아동들이 약 200만 명 이상이라 함. 이는 15세 이하 미성

10) 정식 명칭은 “Gesetz zur Neuordn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recht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KJHG (BGBl. I S. 1163)”이다. 이 법은 입법방식의 하나인 이른바 움니버스법률로 사회법(Sozialgesetz) 제8편의 보충과 개정, 기타 법률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11) 홍문기, 위의 논문, 114면.

12) 위의 논문.

13) 정식 명칭은 “Gesetz zur Erleichterung familiengerichtlicher Maßnahmen bei Gefährdung des Kindeswohls (BGBl. I S. 1188)”이다. 이 법은 입법방식의 하나인 이른바 움니버스법률로 민법과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년자의 20%에 해당함.¹⁴⁾ 이러한 빈곤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한계와 인식 그리고 특히 만성적인 방임과 위해문제가 제기되고 있음.¹⁵⁾

14) Kindler, Von der unterdurchschnittlichen Versorgung zur chronischen Kindesvernachlässigung, NZFam 2016, 872.

15) *Ibid.*, 874.

제 2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

I. 법적인 의미에서 개입

- 영유아 학대에 대해 법적인 개입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우려되거나 이미 현실적인 학대를 방지 또는 중단하게 하고, 장래 위해위험(Gefährdungsrisiko)을 차단하여 영유아를 구호하는 점에 있음.¹⁶⁾
- 법제는 영유아 발달 촉진에 대한 부모의 사적 책임과 공법상 책임과 복지위험에 대한 보호 사이를 구별함. 국가는 우선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통해, 또한 부수적으로 직접적인 영유아 보호를 통해 공법상 책임을 준수함. 이러한 개입은 영유아 보호를 위해 부모의 요청 또는 동의로, 그러나 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한 조치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함.

II.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법제

- 영유아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보호의무는 기본법 제6조¹⁷⁾ 제2항에 따른 국가의 과수꾼이라는 사명으로부터 도출됨. 사회법 제1편(총칙)

16) Wiesner, Rechtliche Grundlagen der Intervention bei Misshandlung, Vernachlässigung und sexuellem Missbrauch, in: Deegener/Körner,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ässigung (2005), S. 283.

17) 기본법 제6조

- (1)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2) 자녀의 돌봄과 양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며,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책임 있는 의무이다. 국가공동체는 부모의 관여를 감독한다.
- (3) 양육권자가 포기하거나 자녀가 그밖에 원인으로 방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되어야 한다.
- (4) 모든 어머니는 국가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5) 혼인의 출생자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혼인중 출생자와 동등한 조건이 입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제1조(사회법의 과제) 제1항에서는 사회국가원칙(Sozialstaatsprinzip)을 표방하고 있음. 사회정의(soziale Gerechtigkeit)와 사회안전(soziale Sicherheit)는 사회국가의 목적을 형성하며 사회서비스의 최종 목표임.¹⁸⁾ 사회법의 대상은 사회법전에서 규정한 서비스제공, 현물 급여, 재정지원임(사회법 제1편 제11조). 이를 사회서비스(Sozialleistung)라 함. 인적, 교육적 지원은 서비스에 속함. 이러한 영유아복지의 위해 시 보호임무는 사회법 제8편 제8a조에서 적시하고 있음.

- 사회법 제8편 제8a조에서 보육·교육자에게 언급한 임무에 따르면, 영유아의 특이한 언행이 전문서비스종사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식별해야 함. 사회법은 영유아복지의 위해에 대해 의미심장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육·교육자가 행동할 것을 규정함.
- 청소년청(Jugendamt)은 영유아복지의 위해에 대해 유력한 근거가 있을 때, 위해위험을 다수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평가해야 함(사회법 제8편 제8a조 제1항). 영유아 보호시설 및 서비스의 전문인력은 보호임무를 적절한 방법으로 인지해야 하고, 위해위험의 평가 시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에게 조언을 구해야 함(같은 조 제2항).
- 위해요소는 현저한 손상이 영유아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예상되는 현재의 위험으로 이해해야 함.¹⁹⁾ 이는 예상되는 손상이 현저한 것인지, 손상발생의 개연성이 분명히 예상되는지 판단해야 함.²⁰⁾

18) Eichenhofer in Eichenhofer/Wenner, SGB I·IV·X (2012), I § 1 Rn. 2.

19) BGH, Beschluß vom 02.07.1956, IV ZB 42/56; Maywald, Kinderschutzbögen - Was sie (nicht) leiten können, FPR 2011, 190, Fn. 1 재인용.

20) Maywald, FPR 2011, 190.

- 공적인 청소년 복지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임무의 준수를 위해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해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됨. 숙련된 전문가 또는 적격자는 그의 인격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임무를 위해 적합해야 함. 사회법 제8편 제72a조(관련전과가 있는 자의 활동 배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형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음.
 - 돌봄(사회복지사업) 및 양육의무의 위반(제171조),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학대(제174조), 피수감자·행정상 유치자 또는 시설에 있는 환자 및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성적 학대(제174a조), 공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제174b조), 조연·치료·간호관계를 이용한 성적 학대(제174c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제176조), 아동에 대한 과중한 성적 학대(제176a조),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제176b조), 성적 강요 및 강간(제177조), 사망에 이르게 한 성적 강요 및 강간(제178조), 저항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성적 학대(제179조), 미성년자 성행위에 기여(제180조), 매춘부에 대한 착취(제180a조), 매매춘 알선(제181a조),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제182조), 기타 제183조~제184g조,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제225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제232조), 노동력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제233조), 인신매매의 후원(제233a조), 유괴(제234조), 미성년자 약취(제235조), 아동매매(제236조).
 - 공적인 청소년 복지기관은 통상적으로 직원의 고용 시 신원조회 증명을 제출하게 할 의무가 있음.²¹⁾ 민간 청소년 복지기관은 사회법 제8편 제72a조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음.²²⁾

21) Winkler in Rolfs/Giesen/Kreikebohm/Udsching, BeckOK SozR (42. Ed., Stand: 31. 7. 2016), SGB VIII § 72a Rn. 2.

22) *Ibid.*, SGB VIII § 72a Rn. 3.

- 위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명예직 또는 부업으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기관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감독 및 양육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시키거나 어떤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함.²³⁾
- 옴니버스법률인 아동·청소년복지법을 통해 형법과 민법에서도 영유아 학대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형법 제171조(돌봄 및 양육의무의 위반) : 16세 이하의 자에 대해 돌봄의무 또는 양육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이를 통해 피보호자를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현저히 해를 끼치거나, 범죄행위를 하거나, 매매춘에 빠지게 되는 위해에 처하게 한 자는 최고 3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게 됨.
 - 형법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 18세 이하의 자 또는 허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해 방어력이 없는 자에 대해 몹시 괴롭히거나 거칠게 학대한 자 또는 의도적으로 돌봄의무를 해태하여 건강상 손해를 끼친 자는 6개월부터 10년까지 자유형으로 처벌됨.
 - 미수자도 처벌될 수 있음.
 - 사망 또는 심각한 건강상 손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1666조(아동복지의 위해 시 재판상 조치)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복지 또는 자산을 위태롭게 되고, 부모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할 생각이 없거나 방지할

23) *Ibid.*, SGB VIII § 72a Rn. 4.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산관리자가 아동에 대한 그의 부양의무 또는 자산관리와 결부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산관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동의 자산이 위태롭게 된 것임.
- 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제3자효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법 제1666a조(비례성의 원칙; 공적 후원의 우선)

- 위해가 다른 방법 또는 공적 구호에 의해서도 대처할 수 없다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조치는 허용됨. 모 또는 부에게 임시적으로 가정집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분리조치가 허용됨.
- 다른 조치가 효과 없이 되거나 위해방지를 위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체적인 인적 돌봄은 금지되어야 함.

○ 신원조회증명(Führungszeugnis) 체계

- 관할 행정청은 연방법무청(Bundesamt für Justiz). 신원조회증명서는 관련 당사자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녹색의 특수 용지에 기재된 증서. 근로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원조회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사적 신원조회증명이 문제됨. 행정적 목적의 신원조회증명은 오직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쓰이고, 형사재판상 판결과 더불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특정한 판단을 포함함.²⁴⁾ 확대된 신원조회증명

24) http://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BZR/FZ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6. 7. 15).

(erweitertes Führungszeugnis)은 학교나 스포츠단체 등 아동 및 청소년 부문에서 활동할 자에게만 필요함.²⁵⁾

- 확대된 신원조회증명은 연방중앙등록법(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BZRG) 제30a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음. 이러한 증명은 법률상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회법 제8편 제72a조에 따른 인적 적합성의 심사, 미성년자에 대한 기타 직업상 또는 명예직으로 감독, 돌봄, 양육 또는 교육과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는 적합한 활동을 위해 신원조회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됨.²⁶⁾
- 확대된 신원조회증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인 신원조회증명과 구별됨.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사회화(Resozialisierung)라는 이익을 고려해 연방중앙등록법 제32조 제2항에서 열거된 사례에서 등록부에 등록된 판결은 신원조회증명에 기재되지 않음.
- 특히 돌봄의무 및 양육의무를 위반,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범죄 행위,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그리고 기타 범죄로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한, 90일 일당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이 인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²⁷⁾
- 만 14세에 이른 모든 이는 등록부상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의 신원조회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제30조 제1항 BZRG). 다음의 경우에는 확대된 신원조회증명의 신청이 가능(제30a조 제1항 BZRG).
 - 이 조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 규정에서 신원조회증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같은 항 1호)

25) *Ibid.*; Wiesner in Wiesner, SGB VIII (2015), § 72a Rn. 21.

26) https://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BZR/Inland/FAQ_node.html#faq5504812 (최근 접속일: 2016. 9. 2).

27) Wiesner in Wiesner, SGB VIII (2015), § 72a Rn. 21.

- 신원조회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같은 항 2호) : 사회법 제 8편 제72a조에 따른 인적 적합성 심사. 기타 직업상 또는 명예직상 미성년의 감독, 돌봄, 양육 또는 교육. 미성년자와 교제를 시작하는 위와 유사한 방식에 적합한 활동.
- 등록행정청(Registerbehörde)은 증인보호기관이 증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임을 통지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위한 등록된 자의 정보기록을 차단한다(제44a조 제1항 BZRG). 등록행정청은 공익에 상반되거나 보호필요성이 있는 제3자의 이익이 크지 않는 한, 차단된 개인정보에 관한 등록부상 정보제공을 거부해야 함(같은 조 제2항 BZRG).

Ⅲ. 영유아 학대방지 관련기관 및 정책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청소년청, 독일청소년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 국립조기구호센터(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NZFH) 등이 있음.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차원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한부로, 2017년 말까지 연장하여 옴니버스법률인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에 의해 ‘연방주도 조기구호(Bundesinitiative Frühe Hilfen)’는 민법, 사회법, 임신갈등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SchKG),²⁸⁾ 형법에 근거를 둬.²⁹⁾

28) 정식 명칭은 “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vom 27. 7. 1992 (BGBl. I S. 1398)”이다.

29) 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zu Frühe Hilfen”, <http://www.fruehehilfen.de/fruehe-hilfen/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rahmenbedingungen-zu-fruehen-hilfen/> (최근 접속일: 2016. 11. 22).

제 2 장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

- 민 법 : 제1626조(친권, 원칙), 제1631조(비폭력적 양육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2조, 제1666조(아동복지의 위해 시 재판상 조치), 제1666a조(비례성의 원칙; 공적 후원의 우선)
 - 사회법 제5편 제24조(부모를 위한 의료상 사전배려) 제1항, 제26조(아동조사) 제1항; 사회법 제8편 제1조(양육에 대한 권리, 부모 책임, 청소년복지), 제8조(아동 및 청소년의 관여), 제8a조(아동복지위해 시 보호위임), 제8b조(전문적인 자문과 아동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동반), 제16조(가정에서 일반적인 양육지원), 제17조(연대관계, 별거, 이혼문제의 자문), 제42조(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권), 제72a조(전과자에 대한 활동제한), 제74조(자율적인 청소년복지의 지원), 제79조(총책임, 기반시설), 제79a조(아동 및 청소년복지에서 질적 향상), 제81조(기타 기관 및 공공기관의 구조적 협력), 제86c조(지속적인 급부의무와 관할변경 시 사례인계); 사회법 제9편 제21조(급부제공자와 계약), 제30조(조기인식 및 조기구호)
 - 임신갈등법 : 제1조(의사표시) 제1항 및 제3항, 제2조(자문), 제3조(자문기관), 제4조(자문기관의 공적 후원), 제5조(임신갈등자문의 내용), 제6조(임신갈등자문의 실행)
- 국립조기구호센터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출연하여 연방건강계몽센터(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내에 있으며, 독일청소년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음. 조기구호의 개념은 이미 1970년대 조기지원(Frühförderung)에 의해 형성되었고, 보건시스템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예방 및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각인되고 논의되고 있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³⁰⁾

- 임신 시부터 및 0세에서 3세 중심으로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동등한 구호서비스를 갖춘 지역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가정과 사회에서 영유아 및 부모의 발전가능성을 사전에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종일제 지원과 함께 부모의 교제 및 양육자격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제공됨. 결정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며 보호, 지원, 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 조기구호는 다양하게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서로 관련되고 보충하는 서비스와 조치를 포함함. 건강증진 측면에서 영유아와 함께 모든 부모에 대한 서비스는 기본임(다방면 및 최초의 예방). 특히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에 관심을 가짐(선별적, 부수적 예방). 가정과의 협력으로 영유아의 복지와 발달에 대한 위험이 사전에 인지되고 감소됨. 영유아복지의 위해를 방지하기에 도움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조기구호에서 영유아보호를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됨.
- 무엇보다도 조기구호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에 기초하며, 시민사회참여와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을 맺고 있음. 조기구호의 실무상 실천을 위한 중심은 관련기관 사이에 밀접한 네트워크와 협력 그리고 임신부 자문, 보건정책, 여러 전문영역간 조기지원, 아동·청소년복지, 기타 사회서비스 부문의 제공에 있음. 수요에 상응한 후원서비스로 전국적인 가정돌봄의 가속화와 부양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둠.

○ 가정법원과 청소년청의 관계

- 가정법원의 교제절차(Umgangsverfahren) 및 아동보호절차에서 가

30) 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Was sind Frühe Hilfen?",
<http://www.fruehehilfen.de/fruehe-hilfen/was-sind-fruehe-hilfen/> (최근 접속일: 2016. 11. 22).

정법원 및 청소년청의 판단은 다방면에서 서로 맞물려 있음. 이 두 기관은 영유아복지의 보장에 중요한 책임이 있고, 계급 조직상 서로 상급기관의 관계에 있지 않음. 예를 들어, 청소년청은 교제접촉 시 구호자를 위한 지원, 영유아복지 위해방지를 위한 급부를 제공함. 그러나 청소년청은 교제 자체 또는 친권(Sorgerecht)상 조치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음. 이는 가정법원의 책임임.³¹⁾

31) Meysen, Familiengericht und Jugendamt, NZFam 2016, 580.

제 3 장 영유아복지를 위한 최근 개혁 논의

I. 사회법 제8편의 개혁을 위한 개정 초안

1. 배 경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6년 6월 7일 사회법 제8편의 개정 초안을 공고함. 양육을 위한 도움의 해결, 발전, 지도에 관해 장애가 있거나 없는 젊은 세대를 위한 아동·청소년복지의 총책임을 목적으로 함.³²⁾
- 개정안은 주로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급효과가 큼. 개정안은 사회사업에 대한 재정정책적 영향력을 넓히려 함.³³⁾ 다음과 같이 각각 2017년 및 2023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의 내용이 상이함.

<표> 2017년 및 2023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의 비교³⁴⁾

2017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2023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제 1 조(양육, 부모책임, 청소년복지에 대한 권리), 제2조(청소년복지의 임무), 제8조(아동·청소년의 참여), 제 8a조(아동복지위해 시 보호위임), 제 9조(양육의 기본방향, 소녀와 소년	제 2 조(청소년복지의 임무), 제5조(소망 및 선택권), 제8a조(아동복지위해 시 보호위임), 제10조(다른 급부와 책무와의 관계, 제20조(긴급상황 시 아동의 보호과 양육), 제21a조(취학

32) Schindler, Reform der Kinder- und Jugendhilfe oder Ende eines Rechtsanspruchs?, ZRP 2016, 167.

33) Gerlach/Hinrichs, Eine erste Analyse des Entwurfs eines Reformgesetzes zum SGB VIII, <http://www.ijosblog.de/wp-content/uploads/2016/06/Rechtsanspruch.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3).

34) http://www.ijosblog.de/wp-content/uploads/2016/09/Synopse-Novelle-SGB-VIII_2308.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4).

제 3 장 영유아복지를 위한 최근 개혁 논의

2017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2023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p>의 동등한 권리), 제9a조(옴부즈기관), 제14조(교육상 아동·청소년보호), 제16조(가정에서 일반적인 양육의 후원), 제22조(후원의 원칙), 제23조(일제아동양육시설에서 후원), 제24조(전일제시설과 전일제아동양육시설에서 후원에 대한 청구), 제24a조(보고의무), 제27조(양육지원), 제34a조(보살핌을 받는 주거그룹, 청소년주거), 제36조(지원계획), 제36a조(참여, 협력, 조정), 제36b조(지원선택), 제36c조(수요조사), 제36d조(지원계획), 제36e조(상설급부의 지원계획을 위한 보충규정), 제36f조(과도기의 관리), 제37조(양육자의 자문 및 후원, 장소적 심사), 제37a조(부모의 자문 및 후원, 상설 서비스의 협력), 제38조(해외 조치의 허용), 제41조(청년의 자립을 위한 급부), 제45조(시설운영의 허가), 제45a조(시설), 제46조(심사), 제47조(신고의무), 제52조(청소년법원법상 절차에서 협력), 제58a조(돌봄등록에서 홀로돌봄에 관한 정보), 제71조(청소년지원위원회, 주정부 청소년지원위원회), 제72a조(전과자의 활동배제), 제76a조(비용인수를 위한 요건), 제76b조(자가조달된 급부의 반환), 제76c조(자금조달 방식의 선택), 제78조(외래서비스의 요금과 급부에 관한 합의), 제78a조(적용범위), 제78b조(급부요금의 인수를 위한 요건), 제79조(총</p>	<p>의무가 있는 장애청소년의 보충적인 돌봄), 제22a조(전일제시설에서 후원), 제27조(아동·청소년의 성장과 할애를 위한 급부), 제28조(청년의 자립을 위한 급부), 제29조(부모의 양육자격의 강화를 위한 급부), 제30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문, 가정자문, 양육자문), 제30a조(조기인식과 조기후원), 제30b조(사회적인 집단공동작업), 제30c조(사회교육적 수반), 제31조(전일제그룹에서 후원), 제32조(전임양육자), 제32a조(시설 및 기타 보살핌을 받는 주거에서 상설 후원), 제32b조(보살핌을 받는 주거그룹, 청소년주거), 제33조(집중적인 사회교육적 개별돌봄), 제34조(아동·청소년의 생계를 위한 급부), 제35조(건강과 의료상 재활을 위한 급부), 제35a조(양육자의 자문 및 후원, 장소적 심사), 제36조(급부계획), 제36a조(참여, 협력, 조정), 제36b조(급부선택), 제37조(수요조사), 제38조(급부계획), 제39조(상설급부의 급부계획을 위한 보충규정), 제40조(과도기의 관리), 제41조(해외 조치의 허용), 제42조(아동·청소년의 양육권), 제44조(전임양육자의 허가), 제50조(가정법원의 절차에서 협력), 제69조(정보수집), 제76a조(비용인수를 위한 요건), 제78b조(급부요금의 인수를 위한 요건), 제85조(물적 관할), 제86a조(청년에 대한 급부의 장소적</p>

2017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2023년 적용을 위한 개정안 조문
책임, 기본시설), 제79a조(아동·청소년의 질적 성장), 제80조(청소년 지원계획), 제81조(다른 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구조적 협력), 제83조(연방의 임무, 전문감정인의 자문), 제86a조(청년에 대한 급부의 장소적 관할), 제86b조(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양식에서 급부를 위한 장소적 관할), 제87a조(허가, 신고의무, 거부를 위한 장소적 관할), 제87c조(보호, 법정돌봄, 법정후견을 위한 장소적 관할), 제92조(원용형성), 제94조(원용범위), 제98조(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제99조(조사표시), 제107조(경과규정)	관할), 제86b조(부모와 아동을 위한 공동주거양식에서 급부를 위한 장소적 관할), 제86c조(관할변경 시 지속적 급부의무와 사례이관), 제88조(해외 체류 시 장소적 관할), 제90조(총합비용분담), 제91조(적용범위), 제92조(원용형성), 제95조(청구의 이관), 제98조(조사의 목적 및 범위), 제99조(조사표시), 제100조(지원표시), 제101조(주기와 보고시기), 제102조(정보제공의무)

2. 주요 내용

- ‘성장을 위한 지원(Hilfe zur Entwicklung)’은 아동·청소년들에게 할애되고, 공식적으로 법정청구로써 인정됨.
-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청구권은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인적 양육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함(사회법(안) 제8편 제27조 제1항). 개정안은 아동복지에 기초한 양육보장에서 아동복지에 기초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룸.³⁵⁾

35) Gerlach/Hinrichs, Eine erste Analyse des Entwurfs eines Reformgesetzes zum SGB V III (4. 2016), S. 1, <http://www.igfh.de/cms/sites/default/files/Gerlach%20und%20Hinrichs%20-%20Analyse%20zur%20SGB-VIII-Reform%20vom%2006.07.2016.pdf> (최근 접속일: 2016. 12. 5).

- ‘성장을 위한 지원’은 청소년청의 재량에 있음.
 - 개정안은 사회법(안) 제8편 제36a조 제1항에서 청소년청에 명시적으로 사안별 적합하고 필수적인 지원의 선택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함.³⁶⁾
- 그룹서비스보다 사회기반서비스 및 표준서비스에 대한 개별사례 지원의 후순위
 - 모든 사회기반서비스와 표준서비스는 사회법(안) 제8편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할애를 위한 급부) 제1항에 따른 성장 및 할애수요의 충족을 위해 사회기반서비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사회법(안) 제8편 제36a조(참여, 협력, 조정) 제2항). 첫 번째 단계에서 개별적인 성장수요가 밝혀진 경우, 사회기반서비스에 대한 법적 효과는 우회시키게 됨. 아동·가족센터(Kinder- und Familienzentrum: KiFaz)에서 공개된 가족상담부터 일일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일일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별 성장수요의 수요충족으로 진행될 수 있음.³⁷⁾
 - 그룹서비스는 개별서비스보다 우선함(사회법(안) 제8편 제36a조). 그룹서비스는 이동식 성장지원 및 할애지원, 성장수요를 위한 종일도움, 수업도움, 할애수요를 위한 급부의 유동성과 관계 됨.³⁸⁾
- 3각 관계의 광범위한 전향
 - 기존의 양육상담 및 쌍방 자금조달을 통해 성장과 할애를 위한 새로운 이동식 급부를 가능하게 할 공공기관의 명시적인 요건

36) *Ibid.*, S. 2.

37) *Ibid.*, S. 4.

38) *Ibid.*, S. 4~5.

포함(사회법(안) 제8편 제41조 제2항). 입법자들은 기부금과 쌍무계약을 통한 제공자의 제도상 자금조달로 지원법상 3각 관계에서 사안별 요금의 원칙적인 전향을 달성하고자 함. 이러한 자금조달법상 전향은 법정청구의 보장에 의한 지원수요 담보의 전향에 부합함.³⁹⁾

II. 영유아복지의 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 포괄적 영유아복지의 회복⁴⁰⁾

- 부모의 양육상 임무와 사회에 대한 할애청구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 희미해지고, 청구근거 불명확. 민간복지기관에 의한 영유아복지의 포괄적 형성은 급부제공 측면에서 혁신적인 사항이 아님.
- 개정안의 근거에서 가능한 한 활기 있는 지방 개편이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 해결의 목적이 달성되어서는 안 됨.

○ 양육지원의 발전과 조정⁴¹⁾

- 성장과 할애를 위한 급부청구의 기준 : 지금까지 미성년의 보호자가 양육지원에 대한 청구권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스스로 성장과 할애에 관련한 직접적인 급부청구권을 가짐. 국가가 보다 적게 간섭하게 되는 행태로 무엇이 펼쳐지게 되는지는 법적으로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의문시 됨. 즉, 영유아의 인적 성장 또는 할애 기회에서 희생 없이 비판적인 또는 완전히 금지

39) *Ibid.*, S. 7.

40) Schindler, Reform der Kinder- und Jugendhilfe oder Ende eines Rechtsanspruchs?, ZRP 2016, 167.

41) *Ibid.*, 167~169.

된 양육행태가 나타나는 경우, 급부에 대한 영유아의 청구권과 이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양육권한의 강화에 대한 부모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음. 영유아복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양육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 구호계획에 관한 규정의 변경과 조정책임 : 지금까지 사회교육상 정의된 구호계획절차(사회법 제8편 제36조)는 앞으로 행정법상 절차규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이때 구호계획 대신에 급부계획에 관한 규정, 수요조사 및 공공복지기관의 선택재량에 관한 규정이 중심임.

○ 급부제공권과 자금조달⁴²⁾

- 영유아 관련 공공복지기관은 의무에 따른 재량으로 자금조달방식의 선택을 판단해야 함. 부수적으로 급부합의와 요금합의의 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의무는 임의규정으로 전환됨. 이는 예를 들어, 공공복지기관이 영유아 상설지원의 공급을 공고할지, 조달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택할지를 선별해야 함을 의미함.
- 공공복지기관은 합의체결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도된 입법근거에서 적합한 시설의 존재는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됨. 총책임은 자금조달책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효과 없는 의도 표명임. 보충성의 원칙, 영유아복지 관련법상 급부관계의 근거, 이와 함께 나타나는 민·관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깨질 수 있음.

42) *Ibid.*, 169~170.

제 4 장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긴장관계

-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IFG)은 개인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보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의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와 신청자의 정보이익, 제3자의 보호이익, 우월한 정보이익 등 행정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⁴³⁾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사이에 정확한 고려는 필수적임.⁴⁴⁾
-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제29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관계자에게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열람을 허용해야 함. 관계자에게는 문서열람청구권이 있음. 예외적으로 임무이행의 방해, 연방과 주의 번영에 대한 불이익, 비밀유지가 필요한 문서, 일부분서에 대해서 열람을 허용할 의무는 없음(같은 조 제2항).
 - 연방법인 정보자유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은 행정절차법 제29조와 함께 준용이 가능함.⁴⁵⁾
- 청소년청에 의한 사회정보(Sozialdatum)의 제3자 조사·검증(Fremderhebung)⁴⁶⁾
 - 사회법 제8편 제4장에서 사회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은 공적 청소년복지기관의 활동을 위한 적용범위에서 사회법 제1편과 제10편의 일반규정과 연방 및 각 주의 정보보호법에 있는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43) Schoch, IFG (2009), § 5 Rn. 24~37.

44) Schiedermaier in Wolff/Brink, BeckOK DatenSR (18. Ed., Stand: 01. 11. 2016), IFG Rn. 8.

45) Ritgen in Knack/Henneke, VwVfG (2014), § 29 Rn. 36.

46) VGH Kassel, Urteil vom 16. 9. 2014, 10 A 500/13.

- 청소년청에 의한 사회정보의 제3자 조사·검증은 사회법 제8편 제62조 제3항의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됨. 다만, 특별규정이 사회법 제8편 제68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사회정보가 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의 위반으로 취득된 경우, 조사·검증의 법률위반이 저장 및 전달 등 정보가공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 부당하게 조사·검증되고 저장된 사회정보의 삭제에 대한 관련당사자의 청구권이 인정됨.
- 사회법 제10편 제25조에서도 관계자에게 절차와 관련한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함.
- 행정청은 일건 서류가 관련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문서열람의 허용을 할 의무가 없음(제25조 제3항). 모든 사회정보(Sozialdaten) 및 영업비밀은 이러한 비밀유지의 대상임.⁴⁷⁾
-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 및 정보에 관한 법(Gesetzes zur Kooperation und Information im Kinderschutz: KKG) 제4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의 위협에 대한 근거가 있는 때에 의료진에게 자문과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가능하게 함. 의료진에게 형법 제34조(정당한 자의 긴급피난)에서 의미하는 자신의 사례와 관련한 이익고려를 배제하고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영유아와 같은 특별한 취약계층을 위한 이와 같은 강화된 보호는 입법적 노력의 바람직한 관점으로써 강조될 수 있음.⁴⁸⁾

47) Schmidt-de Caluwe in Eichenhofer/Wenner, SGB I · IV · X (2012), X § 25 Rn. 15.

48) 그러나 입법자들이 영유아·아동들의 발달심리상 중요한 관점을 완전히 경시하

- 정보자유법 제5조는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 제16조(비공공기관으로 정보전달)에 대해 특별법상 우선함.⁴⁹⁾ 정보자유법 제5조는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는 의미상 개인정보보호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정보이익에 비해 우선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⁵⁰⁾
 - 정보자유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에의 접근은 신청자의 정보이익이 정보접근의 배제에서 제3자의 보호이익을 압도하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또한 연방정보보호법 제3조 제9항에서 의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는 제3자가 명백히 동의한 경우에 전달됨.
 - 여기에서 제3자의 정보는 공적인 정보임.⁵¹⁾ 제3자는 제5조에 의해 실제법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제8조(제3자의 참여 시 절차)에 절차법상 보호를 받게 됨.⁵²⁾ 특별한 개인정보는 민감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인종·민족적 출신, 정치적 입장, 종교·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소속, 건강 또는 성생활이 포함됨.⁵³⁾
 - 정보접근허용을 행정사실행위로 간주하고 신청의 거부를 부담적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상 문서열람 또는 정보(지식)

고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은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Weber/Duttge/Hög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einwilligungsfähiger Minderjähriger als Grenze der ärztlichen Offenbarungsbefugnis nach §4 KKG, MedR 2014, 777 ff.

49) Schoch, IFG (2009), § 5 Rn. 3.

50) *Ibid.*, § 5 Rn. 2.

51) *Ibid.*, § 5 Rn. 20.

52) *Ibid.*, § 5 Rn. 22.

53) *Ibid.*, § 5 Rn. 41.

공표와 같은 정보제공은 정보접근의 신청에 대한 판단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함.⁵⁴⁾ 정보자유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보는 구두, 서면,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정보의 내용상 진실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사실상 정보제공 자체는 행정사실행위임. 이는 공적 정보에 대한 열람의 경우 행정상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됨(정보자유법 제7조 제4항). 하지만 정보접근의 신청에 대한 행정판단은 이와 구별해야 함.⁵⁵⁾ 다른 한편, 정보접근에 대한 신청이 일부분인 경우, 정보접근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의 누설 없이 또는 지나친 행정소모 없이 가능하다는 정도에서 신청을 허용해야 함(정보자유법 제7조 제2항).

54) *Ibid.*, § 7 Rn. 43.

55) *Ibid.*

제 5 장 시사점

- 우리나라처럼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이지만, 영유아를 위해 비교적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음. 빈곤한 가정, 다문화가정, 학대 및 폭력 전력이 있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행정적·사회적·주기적인 관심을 가짐.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서 행해지는 학대를 방지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영유아 학대의 위험요인과 학대행위 사이에 모든 관련성에 대한 여러 조사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가정 및 영유아 관련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찾기 위한 검사(screening) 절차를 시행. 영유아보호 부문에서 이러한 검사에 기초한 절차 및 개입은 특정한 위험요인에 의해 영유아복지 위해의 높은 개연성을 사전에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영유아보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됨. 스크린절차는 영유아 지원, 소아과, 산부인과, 중독지원, 가정심리학상 전문감정 등에서 진행됨.
- 독일에서 가정법원은 청소년청에 대해 명령 또는 지시 권한이 없으며,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도 법의 준용이 가능하지 않음. 영유아지원서비스의 보장 측면에서 독일의 청소년청과 가정법원 사이에 긴장관계를 비추어볼 때, 스크린 등 검사 및 감사를 거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해 행정법원에 의하지 않고, 앞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관의 권한 및 절차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함. 상당한 기관충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법정 명령 또는 지시권한이 필요하며, 입

법적인 조치가 요구됨. 가정법원의 부족한 전문성은 영유아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감.

○ 조기구호와 사회조기경보시스템의 협력

- 영유아 학대사례에서 도출된 사회적·구조적·법적 결함 등 반면교사. 정신적·심리적인 부담이 큰 가정과 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영유아 관련 정보의 공유
- 연령에 적합한 소통기술을 활용. 부모와의 양육 및 교육 파트너 관계 형성

○ 돌봄, 교육, 체육·문화활동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에 참여할 때에 안전하고 지원적 환경을 구성, 학대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함에 목적을 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종사자 자격요건 강화 및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 강화

- 법적 근거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취약계층에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한 증명을 발급하도록 함.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및 종사자의 범죄 및 행정처분 등 이력공개를 제도적으로 확대함. 만약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 적어도 특정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정보와 행정처분 등의 기본정보에 근거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위기관리 전략을 구축함.⁵⁶⁾ 이로써 이용자 측면에서

56)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info/main.jsp>)을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에서는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을 공시하도록 함.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유치원 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를 운영하고 있음.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에서 정보시스템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교육정

적합한 이들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함.

-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관련 직무 및 활동을 담당하는 고용인, 피 고용인,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경찰정보 등과 연동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및 보육·교육서비스 위기관리 전략 툴킷 마련

보시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과 유치원 알리미에서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음. 남인순 국회의원의 2016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중 12.7%만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공시가 유명무실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의 경우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함, <http://blog.naver.com/nisoon/220836062297> (최근 접속일: 2016. 12. 4).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정보공시는 법적 근거가 없음.

<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단위 : 건, 명)

구 분	아동학대 처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및 취소를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총계	자격정지			자격취소		
			소계	원장	교사	소계	원장	교사
2014	34	109	82	40	42	27	8	19
2015	61	104	77	23	54	27	7	20
2016년 6월	38	88	49	8	41	39	9	30
합계	133	213	159	63	96	54	15	39
2016년 9월 현재 정보공시 건수	53 (39.9%)	27 (12.7%)						

출처 : <http://blog.naver.com/nisoon/220836062297> (최근 접속일: 2016. 12. 4)

제 6 장 마치며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수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다방면에서 명백히 효과적인 돌봄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음. 이를 위해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시작해 출생과 함께 첫 생애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통합적 협력적 돌봄이 필수적임.
- 영유아의 빈곤과 학대에 대한 방임은 위해 사례의 주된 부분을 이루며, 이러한 위해로 인하여 영유아의 장기간 심리적 손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침으로 방임의 방임을 주의해야 함.
- 적어도 독일에서는 감정적인 학대 비율이 낮음. 영유아 학대는 위해 배경의 여하를 막론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감정적, 심리적 발달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 학대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전략 중 부모의 양육 및 교제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및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 학대를 확실히 줄이고,⁵⁷⁾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함.
- 영유아 학대 관련 범죄 처벌 강화와 범죄 예방 및 관리에 그치지 않고, 관련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보장과 보호 등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함.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등에서 종사자 및 사회서비스제공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공익신고와의 충돌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해야 함.

57)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중요한 학대 원인의 하나로 꼽으며, 양육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예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김영미,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제2호(2016), 58쪽.

참 고 문 헌

- 김동주, “‘학대 노출 아동’ 10명 중 1명 반복학대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2016. 9. 26,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273602> (최근 접속일: 2016. 11. 24).
- 김영미,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16.
- 남인순 국회의원 블로그,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중 12.7%만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명단 공개 돼!”, <http://blog.naver.com/nisoon/220836062297> (최근 접속일: 2016. 12. 4).
- 박종현,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중 13%만 명단 공개”, 메디컬투데이, 2016. 10. 14,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274339> (최근 접속일: 2016. 11. 24).
- 홍문기, “독일발전과정에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 형성과정과 함의 - 역사적·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 児童虐待防止協会, “子ども虐待とは”, <http://www.apca.jp/prevention/abuse> (최근 접속일: 2016. 11. 21).
- Deegener, Günther/Körner, Wilhelm *et al.*: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ässigung: Ein Handbuch, Hogrefe, 2005.
- Eichenhofer, Eberhard/Wenner, Ulrich *et al.*: Kommentar zum Sozialgesetzbuch I, IV, X, Luchterhand, 2012.

Gerlach, Florian/Hinrichs, Knut: Eine erste Analyse des Entwurfs eines Reformgesetzes zum SGB VIII (4. 2016), <http://www.igfh.de/cms/sites/default/files/Gerlach%20und%20Hinrichs%20-%20Analyse%20zur%20SGB-VIII-Reform%20vom%2006.07.2016.pdf> (최근 접속일: 2016. 12. 5).

Kindler, Von der unterdurchschnittlichen Versorgung zur chronischen Kindesvernachlässigung: Wie lässt sich diese Form von Gefährdung nach § 1666 BGB besser abgrenzen?, NZFam 2016, 872 *et seq.*

Knack, Hans J./Henneke, Hans-Günter *et al.*: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10. Auflage, C.H.Beck, 2014.

Maywald, Jörg: Schutz vor Kindeswohlgefährdung in der Kindertagespflege, Deutsches Jugendinstitut, 2013, http://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Maywald_Kindeswohlgefaehrdung09_2013.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7).

_____, Kinderschtzbögen - Was sie (nicht) leiten können, FPR 2011, 190 *et seqq.*

Meysen, Thomas: Familiengericht und Jugendamt: produktives Ringen oder Machtkampf?, NZFam 2016, 580 *et seqq.*

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zu Frühe Hilfen”, <http://www.fruehehilfen.de/fruehe-hilfen/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rahmenbedingungen-zu-fruehen-hilfen/> (최근 접속일: 2016. 11. 22).

_____, “Was sind Frühe Hilfen?”, <http://www.fruehehilfen.de/fruehe-hilfen/was-sind-fruehe-hilfen/> (최근 접속일: 2016. 11. 22).

- Rolfs, Christian/Giesen, Richard/Kreikebohm, Ralf/Udsching, Peter *et al.*: Beck'scher Online-Kommentar Sozialrecht, 42. Edition, C.H.Beck, Stand: 31. 7. 2016.
- Schindler, Gila: Reform der Kinder- und Jugendhilfe oder Ende eines Rechtsanspruchs?, ZRP 2016, 167 *et seqq.*
- Schoch, Friedrich: Informationsfreiheitsgesetz: Kommentar, C.H.Beck, 2009.
- Thaiss, Heidrun M.: Frühe Hilfen in Deutschland - Chancen und Herausforderungen, Bundesgesundheitsblatt - Gesundheitsforschung - Gesundheitsschutz (2016) 59, 1245 *et seq.*
- Weber/Duttge/Höger, : Das Selbstbestimmungsrecht einwilligungsfähiger Minderjähriger als Grenze der ärztlichen Offenbarungsbefugnis nach §4 KKG, MedR 2014, 777 *et seqq.*
- Wiesner, Reinhard *et al.*: SGB VIII Kinder- und Jugendhilfe: Kommentar, 5. Auflage, C.H.Beck, 2015.
- Wikipedia, "Münchhausen-Stellvertretersyndrom", <https://de.wikipedia.org/wiki/M%C3%BCnchhausen-Stellvertretersyndrom> (최근 접속일: 2016. 11. 27).
- Wolff, Heinrich Amadeus/Brink, Stefan *et al.*: Beck'scher Online-Kommentar Datenschutzrecht, 18. Edition, C.H.Beck, Stand: 01. 11. 2016.
- Ziegenhain, Ute/Künster, Anne Katrin/Besier, Tanja: Gewalt gegen Kinder, Bundesgesundheitsblatt - Gesundheitsforschung - Gesundheitsschutz (2016) 59, 44 *et seqq.*

참 고 문 헌

http://www.ijosblog.de/wp-content/uploads/2016/09/Synopse-Novelle-SGB-VIII_2308.pdf (최근 접속일: 2016. 11. 24).

http://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BZR/FZ_node.html
(최근 접속일: 2016. 7. 15).

https://www.bundesjustizamt.de/DE/Themen/Buergerdienste/BZR/Inland/FAQ_node.html#faq5504812 (최근 접속일: 2016. 9. 2).